케이인증원(이하 ‘K-Certi’라 한다)으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이하 ‘인증조직’라 한다)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조직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증표시의 종류**

인증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인정기관의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의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KAB 인정기관 인정마크는 K-Certi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KAB 인정기관 인정마크는 인증표준 별 인정번호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  |  |  |  |
| --- | --- | --- | --- |
| ISO 마크  (인증조직에서 사용불가) | IAF MLA 마크  (인증조직에서 사용불가) | KAB 인정기관 인정마크  (단독 사용불가) | K-Certi 인증마크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  |  |  |  |
| --- | --- | --- | --- |
| 경영시스템 종류 | 지정번호 | 경영시스템 종류 | 지정번호 |
| 품질경영 | KAB-QC-18 | 교육기관경영 | KAB-EO-01 |
| 환경경영 | KAB-EC-08 | 부패방지경영 | KAB-AC-06 |
| 안전보건경영 | KAB-OC-14 | 식품안전경영 | KAB-FC-04 |
| 원자력공급망품질경영 | KAB-NQ-04 | ESG | KAB-ES-07-PI |

비고1 : 인증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비고2 : ISO(국제표준화기구)의 IAF MLA마크는 인증된 조직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고3 : IAF MLA 마크는 KAB이 IAF MLA에 가입한 인증제도로 KAB과 IAF MLA 마크 사용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영시스템, 제품, 서비스, 자격 및 기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IAF의 목적에 부응하여 KAB은 국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에 가입하였으며, KAB에 등록된 당 인증원은 IAF MLA 마크를 사용하거나, 가입 사실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표시 사용지침**

인증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 인증기관의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방법
2.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최소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원본 색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인증기관 마크는 단독으로 사용 가능), 마크 하단에 해당 인증표준 별 인정번호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5.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지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 및 인증범위에 대해서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6.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좌우 대칭인 경우>

|  |  |
| --- | --- |
|  | 인증표준별 인정번호  KAB-XX-00 |

<상하 대칭인 경우>

|  |
| --- |
|  |
| 인증표준별 인정번호  KAB-XX-00 |

<통합 인증인 경우>

|  |
| --- |
| 인증표준별 인정번호  KAB-XX-00 |

1. 인증표시 사용요령

인증표시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모든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표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제품 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품목과 담뱃값, 통조림, 음료수 캔 등의 용기와 같이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단, 건물 또는 차량 제조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사 경영시스템 인증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건물이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고1: 단, 상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K-Certi’로부터 KS Q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하에서 제조된 OO라는 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고2 : 제한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 인증기관 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비고3 : 유형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해당 문구 및 동반되는 정보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해서는 안됩니다.

1. 인증표시 홍보 및 제한

인터넷,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1.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인증의 정지 혹은 취소 시,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문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합니다.
4.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5.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6. 케이인증원 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인증기관 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8. ‘세계 최초로 OO부분에서 국제 품질표준 ISO 9001 인증을 획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인증의 사실을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는 없으며,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9. ‘ISO로부터 인증 받은’, ‘ISO 인증’, ‘ISO인증서’,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제 3자에게 승계, 양도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비고1 :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인증표시 사용중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인증표시의 오용**

1. 인증표시의 올바른 사용은 인증조직의 의무사항입니다. 인증표시(또는 인증서)의 오용 시 K-Certi의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오용-인증조직이 잘못된 인쇄물을 즉시 회수하거나 오용이 시정될 때까지 인증효력이 정지됩니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 태만/기만적인 오용 – 인증조직이 인증표시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잘못 사용한 경우, 태만/기만적인 오용으로 간주되며, 인증이 취소됩니다. 반복적인 단순 오용은 태만으로 간주됩니다.

1. 인증정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 9조 과징금 부과 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 케이인증원은 이러한 사실을 KAB에 보고합니다.

# **인증 홍보 준수사항**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회에 관한 법률 제 3조 관련)

1.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시]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1. 수상•인증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시]

- ISO 9001 등의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1.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시]

-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 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1. 수상•인증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2.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일정 기간의 수상•인증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상•인증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3.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4.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인증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띈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시]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OO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속서 1]**

☞ 명함 사용 예 (ISO 9001 인증 시)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위치는 기업이 희망하는 위치에)

|  |
| --- |
| 업체로고 (주) OOOO  OO팀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417호  O O O Tel. 02-561-9001 Fax. 02-561-9002  HP. 010-XXXX-XXXX E-mail. kcert@kcerti.or.kr |

☞ 봉투 사용 예 (ISO 9001 인증 시)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위치는 기업이 희망하는 위치에)



# **[부속서 2]**

아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경영체제 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참고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마크사용 대상  마크사용 시 표기방법 | | 제품 \*1 |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2 |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
| 마크의 사용 \*3 | 설명이 없는 경우 | 허용 안됨 | 허용 안됨 | 허용 됨 \*5 |
| 설명이 있는 경우 \*4 | 허용 안됨 | 허용 안됨 \*5  (문구는 사용가능) | 허용 됨 \*5 |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있는 제품. 시험/분석 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는 판지 등으로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구는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4. 이는 “(브랜드 또는 회사명) 케이인증원으로부터 (해당 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합니다. 이 경우, 조직 명 (예. 브랜드 또는 회사명), 경영시스템 유형 및 케이인증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와 같은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홍보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주석은 특정한 인증마크,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의 사용 조건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